##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45 발의연월일: 2024. 9. 10.

발 의 자:용혜인·김남근·김남희

송재봉 · 염태영 · 윤종오

이수진 • 전종덕 • 정춘생

정혜경・조 국・진선미

황명선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 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하는 것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2018년 109만 명, 2019~2020년 130만 명, 2021년 151만 명, 2022년 157만 명). 이에 대해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초단시간 근로와 일반 단시간 근로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휴식권이라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근로조건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단시간 근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아도 부당하다"라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이에 「근로기준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삭제).

법률 제 호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  |
| ① · ② (생 략)        | ①·② (현행과 같음)       |  |  |
|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  | <u>&lt;삭 제&gt;</u> |  |  |
| 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                    |  |  |
|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   |                    |  |  |
|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  |  |
| 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  |                    |  |  |
|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